

종합 감사

감사 보고서

- 2024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감사 -

2024. 8.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 II.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 1. 일반 현황 2
 - 2. 예산 현황 2

- III. 감사 결과 3
 - 1.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 3
 - 2.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6
 - 3.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 사후관리 부실 11
 - 4.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적정 14
 - 5.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17
 - 6.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 20
 - 7. 승진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22
 - 8. 채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24

- IV. 처분 요약 2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3. 10. 2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들의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센터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회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인사·복무·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 준수 여부와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에 앞서 센터에 대한 기존 감사 결과(2019년 수감), 국회 논의 사항 및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심층 점검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8명의 감사 인원이 2024. 3. 4.부터 3. 22.까지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4. 4. 11.부터 4. 19.까지 관계자 문답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2024 6. 12. 센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6. 19.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이라 한다.)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2008.1)되었다.

센터는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활동을 위해 ①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BI(Business Incubator :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②장애인 기업의 수출, 전시회 참가, 인증 등 판로지원, ③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기업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④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센터 조직은 3본부 7부 및 16개 지역센터와 8개 특화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정원 49명, 현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산 현황

센터의 예산은 '19년 이래 증가하다가 '22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1.6%) 증가한 10,517백만원이며,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Ⅲ. 감사 결과

Ⅲ-1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

1. 업무개요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간 100억원 내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의 일부(’19년~’23년 평균 약 23%)를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센터는 연초가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당해 연도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세부 실행(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 중 ‘인건비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중도퇴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잔여인건비가 발생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인건비 관련 비목(성과급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센터가 휴·퇴직자 발생에 따른 잔여 인건비 4억원을 국고 반납하지 않고 내부성과급으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집행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정된 정산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하고,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당해 연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일정 인상률 안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내 인건비도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결과, 센터는 2012년부터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센터는 연도별 인원변동에 따른 직급별 평균단가, 연도별 증원소요 인건비 계산 및 총인건비 인상률 검증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발생한 휴·퇴직자 인건비를 연말 내부성과급으로 집행함으로써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 1,644,978,803원 대비 1.8% 증가한 1,674,588,421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123,595,743원**이 많은 1,798,184,164원을 집행하여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이 9.31%에 달하였고, **2021년**의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 1,846,145,857원 대비 0.9%

증가한 1,862,761,170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64,074,785원**이 많은 1,926,835,955원을 집행하여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이 4.37%에 달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 1,964,420,537원 대비 1.4% 증가한 1,991,922,425을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40,642,888원**이 많은 2,032,565,313원을 집행하여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이 3.47%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5년)을 감안한 최근 5년간의 과다 지급 인건비 총액은 합계 228,313,416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이사장은

① 장애인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집행 관련,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또한 향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의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심사 및 보조금 확정’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주의)

1. 업무개요

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점포)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사업(이하 “점포지원사업” 이라고 한다)을 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다.

점포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센터 명의로 임차하여 대상기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복권기금 90억원 및 국고 보조금 85.8억원으로 재원(총 175.8억원)이 마련되었고 2018년도부터는 회수되는 보증금으로 재지원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지원업체당 전·월세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을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가능하다.

2. 법령 및 관련 근거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예산 낭비 신고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유보하는 등 소관 사업 관련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센터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입주목적물 적정여부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관련>

「장애인점포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

면 센터는 해당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잔존평가액이 감정가의 20% 미만이거나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관련>

「운영지침」 제34조에 따르면 월세, 관리비 및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이행보증보험(전세보증금의 12%)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운영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센터는 수혜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손실비용과 해당 사업 및 센터의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관리비(지원보증금×1.5%×계약기간)를 징구 할 수 있고, 수혜자는 관리비를 선납 또는 연납으로 납부하되 연납시에는 피보험자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센터는 수혜자가 잔금 지급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하지 않을 때에는 전세보증금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수채권 결손처분 관련>

「운영지침」 제52조에 따르면 센터는 점포지원사업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등을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보증금) 및 관리비(대상자가 센터에 납부), 손실발생비용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 후 센터는 결손처분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특수채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검토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사업비 집행 비효율

점포지원사업의 사업예산은 센터 전체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점포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경상경비성 보조사업과는 달리 회수된 보증금으로 다른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집행잔액을 반납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확보된 재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5개년도 점포지원사업 수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센터는 가용 예산 대비 지원금액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예비후 순위자가 있음에도 계획된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않는 등 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연 평균 48억원의 예산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활용되지 않고 통장에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이번 감사기간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업체 120개사에 대하여 점포 선정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12개 업체(10%)는 임차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20% 미만임에도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8건은 점포 선정심사 종합점수 또한 70점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함에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미납월세 및 원상복구 이행) 관리 부적정

2019~2023년도에 지원된 총 120개 업체 중 20개 업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1년도에 지원된 ‘○○○’이라는 업체는 월세 및 원상복구 비용 미납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1억 3천만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행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2023. 6. 9. 협약이 종료되고도 아직까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센터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

라. 주관기관 관리비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리 부적정

센터는 점포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혜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의 해지 등을 검토한 바가 없고, 2023년말 현재 55개 업체 약 6천 7백만원의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이며, 이 중 30개 업체(미납금액 3천만원)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관리비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5개년 지원업체 중 관리비 연납을 신청한 기업 40개 중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한 업체는 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는 2019년 10월 미납관리비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나 용역 비용 등을 감안시 실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도에는 미회수 관리비 약 27백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등 관리비 수납(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가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 미납 관리비 보유액(6천 7백만원) 감안시 향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된다.

마. 보증금 회수 활동 및 미수채권 결손처분 심사 소홀

센터는 2019년도에 보증금 3건, 27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도에는 주관기관 관리비 15건, 27,759천원 대한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미회수보증금 및 미납관리비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센터는 점포지원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한 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증금 결손처분시에도 경매 진행에 따른 실익 검토 없이 결손처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보증금에 대한 결손처분 심사시 보증금 반납의무자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수혜자를 대상으로 심의.의결 하는가 하면, 임대인 및 수혜자의 소재나 재산 현황을 조사·확인한 바가 없고, 결손처분 판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심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2022년도에 주관기관 관리비 결손처분시에도 납부의무자인 수혜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를 파악하고 결손처분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각 심사를 진행 하였어야 하나, 심사대상 15건에 대하여 개별 심사 없이 일괄 가결하는 등 결손처분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센터는 결손처분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관리대장 및 결손처분표를 따로 보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특수채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특수채권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①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가용재원의 집행 효율을 제고하고, 수혜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내실있게 운영·관리하여 보증금 회수 및 관리비 징구 등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통보)

② 임차목적물의 잔존평가액 및 선정심사 점수가 요건에 미달함에도 부적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행보증보험 발급 관리 및 보증금 회수 활동, 결손처분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고 및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개인경고, 개인주의)

1. 업무개요

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우선 지정 등 창업지원 특례 및 자금지원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장애인고용비율”이라고 한다)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7조 및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센터 사업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의 취소 결정이 있는 즉시 시스템(구매정보망)에서 발급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검토결과 확인된 문제점

센터는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 등으로 장애인기업의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혜택을 입는 등 선의의 장애인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차단하고자, 2019년도부터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해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먼저 전체 등록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내 사업자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여 휴·폐업 및 미등록기업을 가려내고, 다음으로는 센터에서 제공한 모니터링 대상기업들에게 질문지를 통한 전화조사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전화조사 결과 의심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서 취소 대상 기업을 센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센터는 장애인기업 취소대상을 확인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구매정보망에 장애인기업 정보를 삭제하고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9년도 취소 대상 업체 131개 중 33개 업체, 2021년도에는 309개 업체 중 42개, 2023년도에는 371개 업체 중 36개 업체의 확인서를 취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인서 취소 사유별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폐업 등을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하나, 2019년~2023년 모니터링시 사업자 폐업 및 미등록 기업 총 1,200개 업체 중 10%인 120개 업체만 확인서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센터는 기업의 대표자가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취소를 검토하여야 하나, 5개년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비장애인으로 변경된 업체 총 122개 중 28개 업체만 확인서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기업의 양도로 비장애인기업이 된 업체 23개 중에서도 2개 업체만 확인서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센터는 '23 모니터링 시 처음으로 기업규모 변경에 따른 장애인고용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되어 장애인고용비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 업체 34개 중 25개 업체가 장애인고용비율을 미충족함에도 25개 업체 모두 확인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센터는 위장 장애인기업을 찾아내 실제 장애인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부에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모니터링을 용역을 의뢰해 실시하고도 확인서 취소 대상기업에 대하여 제때 취소 처리를 하지 않아, 취소대상 업체 170개 중 2019년~2023년 동안 65개 업체가 부적정하게 장애인기업의 자격으로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하여 납품(1,310건, 575억원)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공공구매 기능을 왜곡하였고, 그 외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제도를 악용하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취했을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①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기관주의),

② 금번 감사 결과 확인서 취소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통해 확인서를 취소 처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또한 공공구매에서 부당하게 장애인기업 혜택을 받은 65개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센터는 2022년도부터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이하 “장애인 사업주”라 한다)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지원금 부정수급 및 폐업기업 확인 관련 >

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사후관리 기간 종료(지원 결정일부터 1년) 전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장애인 사업주 사망 또는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검토 및 사업 사후관리 소홀 관련 >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센터는 지원대상자에게 센터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도록 되

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센터는 사후관리 기간 종료(지원 결정일부터 1년) 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방문,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센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사업주 110명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0명의 장애인 사업주에게 점자정보단말기, 휠체어 추진 장치 등을 지원하였다.

가. 장애인 사업주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

이번 감사기간 중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80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 등 2개 업체가 2023년도에 사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9,540,000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폐업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 업무 관리 소홀

센터는 2022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업체의 폐업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어, 폐업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업체의 폐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8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등 3개 업체의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폐업하여 지원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의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23.10.20.)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24.2.27.)하여 지원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 데도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검토 및 사업 사후관리 소홀

센터는 2022년도에 ‘●●’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센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하여 제출하는가 하면, 2023년도에는 ‘■ ■’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공학기기 지원 금액(4,313,735원)보다 낮은 금액(4,308,735원)으로 발행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지원금 집행)해 주는 등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센터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80개 업체에 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공학기기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현장 방문, 전자우편 등)하여야 하는데도 2022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는 등 동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3항 가” 등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이사장은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업지원 후 1년 내 폐업한 업체에 대해 지원금 11,115,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시정요구)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위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통보)

③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검토 및 사업 사후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경고)

1. 임금피크제 도입 개요

2015.5.7.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령자의 정년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명시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직군(종전 직급에서 제외하고 별도직군의 현원으로 관리) 또는 초임직급(종전 직급의 현원으로 관리하고 초임직급의 별도정원으로 신규 채용 가능)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타 공공기관’인 센터에서도 2018.7.2. 소속 근로자 전원 투표와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다.

2. 관련 규정

센터는 소속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을 두고 있다.

또한 센터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센터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호칭은 “전문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호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의 직무와 직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직무·직책 조정 및 근무시간 단축)을 둔 이유는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이와 함께 창업·재취업 교육, 직무·직책 조정, 근무시간 단축 등 대상자 배려를 위한 적절한 조치(이른바 ‘대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조정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상 조치’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센터의 첫 번째 임금피크제 대상자였던 A의 경우를 살펴 보면, (재)장애인기업 종합센터 부산지역센터에 근무해 오던 중 2020.1월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었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 동안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근로 시간 및 업무량은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 34,736,016원의 지급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陳情)을 2022.10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진정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피진정인(센터)은 ‘진정인의 희망 직무 및 근무지를 조사하는 등 대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피진정인에게 직무 및 직책 조정과 관련한 권한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임금삭감의 대상 조치로서 직무 등의 변경을 위한 피진정인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진정인(A)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22진정0837600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2023.10.25.)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년보장(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상 조치가 동 제도의 핵심임을 알 수 있는데, 센터에서는 2023.7.1.부터 임금피크 1년차에 들어 가는 대상자 B(1급 본부장)에게도 근무시간 단축 등 적절한 대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외협력단장(2023.12.까지 인천지역센터 근무)에서 지역육성본부장(2024.1.부터 서울 본부 근무)으로

인사 발령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B의 경우 임금피크 1년차 감액률이 15%로 근무시간을 09시~17시(금요일은 16시)로 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위원’으로서 그에 걸맞은 직무·직책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나, 센터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 B를 지역육성본부장으로 인사 조치하여 업무 부담을 가중, 적절한 대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속하고, 직원은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서는 ‘대상자’의 직무·직책을 조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상대로 적절한 대상 조치를 할 권한이 있고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이사장은

임금피크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상대로 한 재취업교육, 직무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센터는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센터 임직원은 총 324건의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정」에 따라 임직원은 관계법령·정관 그리고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월 3회 초과 실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직원 외부강의 실시 현황을 검토한 결과, J 센터 장 외 3명은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월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외부강의 신고 기한 미준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직원 외부강의 실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외부강의 신고 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이사장은

앞으로 외부강의 신고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1. 업무 개요

센터는 2018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8명을 승진임용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승진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도 ‘정·현원차 최소화’,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센터에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공공기관 증원요구서 양식에 따르면, ‘직급체계는 기관 특성에 따라 별도 작성 가능하나 기관별 직제규정, 정부 경영지침 및 증원협의내용 반드시 준수 요망(위반시 향후 증원협의시 반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영지침 및 증원협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승진 계획의 사전 미공지 등

센터는 혁신지침에 따라 승진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일반 승진과 특별 승진을 불문하고 승진 계획을 전 임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센터 승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과 2024년을 제외하면 승진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에 실시한 특별승진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승진 인원, 승진 요건 등 특별 승진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기관 직급별 정·현원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 인사 실시

센터의 연도별·직급별 증원 요구 및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센터에서 증원을 요구한 직급은 주로 4~6급이고, 3급 이상 직급에 대해 증원을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증원 반영 결과 11명만큼 정원이 증가하여 2024년 4월 기준 정원은 총 49명이다.

그런데 센터의 연도별·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승진 인사('20.1월 승진 임용)의 경우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3명인 4급 직급에 추가로 4명이 승진하였으며, 2023년 승진 인사의 경우 정·현원이 모두 1명인 3급 직급에 추가로 3명이 승진하는 등 정원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정·현원이 일치되지 않는 인사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이사장은

앞으로 승진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센터는 「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요령」에 따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매각, 폐기, 양여 등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재물조사 결과 물품 개수는 3,352개, 자산가액은 총 1,334,259천원으로 파악되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물품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물품 취득시 [서식 1]에 따른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요령」 제6조에 따르면 재물조사는 연1회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물품 취득에 따른 검수조서 양식([서식 1]) 부재, 검수조서 미작성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면 물품 취득시 [서식 1]에 따른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식 1] 검수조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검수조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취득한 물품을 맞게 수령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일부 연도의 재물조사 미실시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재물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년과 2021년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외 연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과 2021년 재물조사 실시 결과를 보면, 자산 개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2년 이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재물조사 미실시로 인해 기간동안 자산의 변화나 신규 자산 현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 이사장은

① 앞으로 물품 취득시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자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②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물품 취득시 검수조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도록 [서식 1] 검수조서 양식을 규정하는 등 물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주의·경고 14건(개인 9, 기관 5), 시정 요구 1건, 통보 7건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부당 집행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경고 통보	-	'24. 8월	
		중소벤처 기업부	주의(부서)			
2	장애기업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통보	경고(4) 주의(2)	'24. 8월	
3	장애기업확인 관련 사후관리 부실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주의 통보 통보	-	'24. 8월	
4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적정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시정요구 통보	경고(2)	'24. 8월	
5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통보	-	'24. 8월	
6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	주의(1)	'24. 8월	
7	승진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주의	-	'24. 8월	
8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재)장애인 기업종합 지원센터	주의 통보	-	'24. 8월	

2. 개인 처분 명세

□ 경고 6명, 주의 3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 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C		O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2			D		O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3			E		O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4			F		O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5			G	O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6			H	O			장애인기업 점포지원사업 관리 부실
7			I		O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 수령 등 부적정
8			E		O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 수령 등 부적정
9			J	O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